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11) 공개번호 10-2006-0109562  
G06Q 20/00A2 (2006.01) (43) 공개일자 2006년10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5-0031686  
(22) 출원일자 2005년04월15일

(71) 출원인 정관선  
광주 북구 동림동 1147-1 푸른마을주공3단지아파트 313-702  
옥윤선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925(8/2)

(72) 발명자 정관선  
광주 북구 동림동 1147-1 푸른마을주공3단지아파트 313-702  
옥윤선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925(8/2)

심사청구 : 없음

(54)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제3자의 승인에 의한금융거래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금융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가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에 자신의 금융거래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제3자를 설정하는 단계와, 제3자정보를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단계와, 금융 거래용 단말기로 부터 전송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로 부터 해당 제3자를 정보를 읽어들이는 단계와, 상기 읽어들이는 제3자 정보에 의해 통신망을 연결한 다음 현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제3자의 승인정보가 수신되면 금융거래를 인정하고 완료하는 단계와, 제3자의 승인정보가 수신되지 않거나 거부되면 거래를 중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거래당사자와 결제 승인자를 달리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제3자, 승인, 금융, 거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본 발명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시스템의 블럭구성도.

도 2 - 본 발명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의 제어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금융거래용 단말기 20: 정보통신망

30: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

31: 금융거래정보 전송모듈 32: 제3자승인정보 수신모듈

33: 제3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

40: 제3자 이동통신단말기 50: 이동통신사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송금과 대금결제, 신용카드 사용시 제3자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알리고, 제3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당사자의 거래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요즘의 모든 금융거래(예금인출이나 송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비밀번호, 인증번호, 거래승인번호 등의 다양한 보안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범죄자가 거래당사자를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거래당사자를 죽이고 가로챈 카드와 비밀번호, 휴대폰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폐단을 갖는다.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시 결제승인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미리 설정해둔 제3자가 이동통신단말기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해 거래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카드 사용 및 송금, 금액인출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은, 먼저 금융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가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에 자신의 금융거래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제3자를 설정하는 단계와, 제3자정보를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단계와, 금융 거래용 단말기로 부터 전송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제3자를 정보를 읽어들이는 단계와, 상기 읽어들이는 제3자 정보에 의해 통신망을 연결한 다음 현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제3자의 승인정보가 수신되면 금융거래를 인정하고 완료하는 단계와, 제3자의 승인정보가 수신되지 않거나 거부되면 거래를 중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시스템을 도시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용 단말기(10)는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등과 같은 금융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지칭하며,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일 수도 있고, 은행 등의 단말기가 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가 될 수도 있다.

상기 금융거래용 단말기(10)는 금융 거래시 금융결제 승인을 위하여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간에 정보통신망(20)에 의해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금융거래용 단말기(10)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상기 금융 거래 정보는 금융 업무의 종류, 금융 거래 액수, 금융 거래 장소 등이 될 수 있다. 이때 금융 업무의 종류로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이 될 것이다.

상기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금융거래용 단말기(10)로부터 송신된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 이동통신단말기(40)으로 전송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전송모듈(31)과, 제3자 이동통신단말기(40)로부터 송신된 결제 승인 여부를 수신하기 위한 제3자 승인정보 수신모듈(32)과, 거래당사자가 금융거래 전에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에 제3자의 정보를 저장해두기 위한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33)를 구비하고 있다. 이때 상기 제3자 정보는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가 될 것이며, 상기 제3자의 정보는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의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33)에 입력되어져야 한다.

상기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금융거래용 단말기(10)로부터 송신된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신되면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33)로부터 제3자의 정보를 읽어오게 되고, 상기 제3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50)을 경유하여 제3자의 이동통신단말기(40)에 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제3자는 이동통신단말기(40)를 통해 전송된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 다음 그 결정된 결과를 다시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로 전송하게 된다.

결국 상기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수신된 제3자의 승인정보를 바탕으로 승인되었으면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거나 거부되었으면 거래를 중지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상기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금융거래용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된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신되어지면 미리 거래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제3자의 정보를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33)로부터 읽어오게 된다.(300단계,400단계)

다음 상기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해당하는 제3자의 이동통신단말기(40)의 전화번호에 의해 이동통신사(50)을 경유하여 상기 금융거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된다. 이는 금융거래정보 전송모듈(31)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500단계,600단계)

상기 전송된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에 의해 제3자는 요청된 결제를 승인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판단하게 되고, 결정된 내역을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에 전송하게 된다. 이때 상기 승인정보의 전송은 제3자 이동통신단말기(40)에서 키입력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700단계)

상기 전송된 승인정보는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에 수신되어지고, 상기 수신된 승인정보는 제3자 승인정보 수신모듈(32)에 의해 판단되어지는데 승인일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거래가 완료되도록 하며, 승인거부일 경우에는 거래가 중지되도록 한다.(800단계,900단계,1000단계)

따라서 상기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30)는 수신된 제3자의 승인정보를 바탕으로 승인되었으면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거나 거부되었으면 거래를 중지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흐름을 갖는 본 발명은 거래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 이하 금액의 거래는 제3자에게 통지않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만 거래할 때 제3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와 제3자의 불편함을 좀 더 덜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 발명의 효과

이처럼 본 발명은 거래당사자와 결제 승인자를 달리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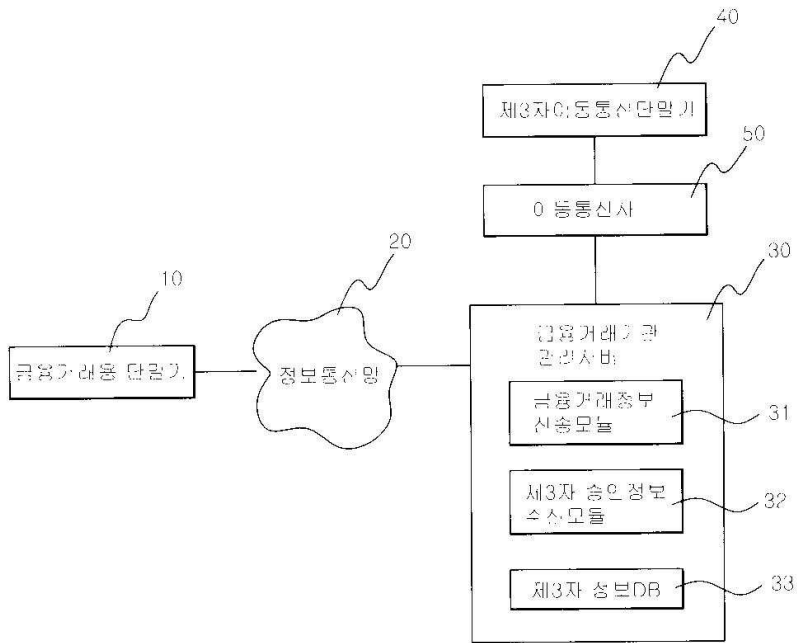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금융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가 금융거래기관 관리서버에 자신의 금융거래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제3자를 설정하는 단계와, 제3자정보를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단계와, 금융 거래용 단말기로 부터 전송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제3자 정보데이터베이스로 부터 해당 제3자를 정보를 읽어들이는 단계와, 상기 읽어들이는 제3자 정보에 의해 통신망을 연결한 다음 현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제3자의 승인정보가 수신되면 금융거래를 인정하고 완료하는 단계와, 제3자의 승인정보가 수신되지 않거나 거부되면 거래를 중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제3자의 승인에 의한 금융거래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